

#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873
----------	-----

제출연월일 : 2000.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정이유

-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

##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안 제4조)
-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조)
-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자율성,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주도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14조)
-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6조)

-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8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 인건비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 대비 보험가입비

□ 사전예고결과

- 입법 예고 기간 : 2000. 4. 1~ 4. 20 (20일간)
- 예고문게시장소 : 실·과·소·동 게시관 및 안산시 홈페이지
- 입법 예고 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조례제정 방침 결정문: 불임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기본안 : 불임  
- 행정자치부 1999. 12. 21)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안 : 불임  
- 경기도자치 13290-95(2000. 1. 11)호
- 경기도 시·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불임(부천,안양)  
- 성남, 파주, 김포, 부천, 안양시

#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 3 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 제 2 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 4 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구성)** ①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 8 조 (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1.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 2. 당해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해태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책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민간협력담당이 된다.

### 제 3 장 자원봉사센터

**제12조 (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유급직원으로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배치인원,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사업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 (위탁운영)** 시장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장 자원봉사진흥

**제15조 (등록)** 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시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17조 (자원봉사주간)** ①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험가입)**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873
----------	-----

제안년월일 : 2000. 7. 1.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

## 1. 수정이유

-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예산 및 결산, 증서 교부, 경비지원을 위한 평가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 자원봉사센터의 유급 직원을 4명 이내로 들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 제2항)
-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함 (안 제15조 제2항)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및 결산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자원봉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 자원봉사자의 경력인정 및 관리를 위한 증서교부 조항을 신설함 (안 제18조)

##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상담 및 지도, 관리에 필요한 4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센터 유급직원의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9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과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당해연도 사업계획등 그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장(소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20조로,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원봉사활동의 증서교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센터의 설치)</p> <p>①(생략)</p> <p>②<u>센터에는 유급직원으로 상담요원과 전산요원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배치인원, 자격요건, 근로조건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신설)</p>	<p>제12조(센터의 설치)</p> <p>①(원안과 같음)</p> <p>②<u>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상담 및 지도, 관리에 필요한 4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수 있다.</u></p> <p>③<u>센터 유급직원의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4조(위탁운영)<u>시장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14조(위탁운영)①<u>시장은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②<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u></p>
<p>(신설)</p>	<p>제15조(예산 및 결산)①<u>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②<u>센터장(소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u></p> <p>③<u>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16조(지도감독)<u>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등 재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u></p>
<p>제15조(생략)</p>	<p>제17조(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신설)</p> <p>제16조(자원봉사 활동의 지원)</p> <p>①(생략)</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된다.</p> <p>제17조(생략)</p> <p>제18조(생략)</p> <p>제19조(생략)</p>	<p>제18조(자원봉사활동의 증서교부)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제19조(자원봉사 활동의 지원)</p> <p>①(원안과 같음)</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원 봉사자 및 단체의 과년도 자원봉사실적과 당해연도 사업계획등 그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p> <p>제20조(원안과 같음)</p> <p>제21조(원안과 같음)</p> <p>제22조(원안과 같음)</p>